

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
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9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「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」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,
- 나. 시금고·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후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○ 대상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

- 대 표 : 남유진
- 소재지 :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
- 출연금액 : 550백만원

※ 시금고 약정(2016. 9. 7.)

구분	총액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대구은행	12억원	4억원	4억원	4억원	
농협	5억원	1.5억원	1.5억원	2억원	

나. 주요 사업

- 사 업 명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
- 사업기간 : 2011년부터
- 사업내용
 - (재)구미시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분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
 -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: 190명, 3억1천만원 지급예정
 - ▶ 고등학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고교특기장학금
 - ▶ 대 학 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기회균등/예체능특기 장학금

다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「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금고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협약함에 따라,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·금고 간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하므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출연이 필요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- (4)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

② (생략)

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) ①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이 건 호
	담 당 자	조 성 현 (480-6783)